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인정서 작성 방법

입학 전 취득한 학점의 인정범위

- 1) 교육대학원 입학 전 '고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관련학과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음
- 2) 전공학점의 학점인정은 학점인정 대상 교육기관의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대학원 포함)에서 이수구분이 '전공'으로 표기된 과목에 한하여 인정 가능함
(단, '일반선택', '교양' 등으로 이수한 학점과 교직과목으로 이수한 교과교육영역 과목의 학점은 전공과목으로 인정 불가)
- 3) 교육대학원 입학 후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인정서'를 작성하여 제출 후 전공주임교수 및 교직주임교수가 인정한 과목에 한하여 학점인정 가능
- 4) 학부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의 인정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며, 해당 과목을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이수한 경우 출신 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되었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교직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대학에서 이수한 경우 인정 불가)
- 5) '교육학과'를 주전공,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졸업한 경우에는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학점을 교직과목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단, 교직과목으로 이수한 학점을 전공과목의 이수학점으로 중복 인정은 불가)

교원자격증 취득희망자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인정서」 작성 방법

가. 제출 대상: 중등학교정교사(2급) 및 전문상담교사(2급) 교원자격증 취득 희망자

※ 재교육, 부전공, 전문상담교사(1급), 특수학교정교사 취득 희망자는 해당없음

나. 제출서류

제출서류	내용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인정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부 양식 작성 후 서명하여 원본 제출 • 양식 변경 불가(워드 doc 문서로 옮기거나, 세로 문서, 크기 변경 금지)
학부(및 전적대학원) 최종 성적증명서 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증명서 상 '이수구분'이 표시된 것만 접수함 (이수구분 미기재 증명서는 출신대학에서 재확인하여 발급 후 제출) • 학점인정 대상과목이 있는 성적표는 모두 제출
(해당자) 교직과목 이수 확인서 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 전 이수한 교직과목이 있는 자가, 이수한 교직과목이 성적표 상 '일반선택' 혹은 '교양'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출신대학에서 발급받아 제출
(해당자) 교원자격증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 기 소지자에 한함
(대학원 과정 학점인정 해당자) 대학원 최종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원본 각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하고자 하는 표시과목과 동일한 전공 졸업자에 한하여 인정 가능

다. 전공과목 학점인정 작성방법

- 1) 교육대학원의 입학 전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중,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과 관련된 학과 (또는 전공)에서 이수구분: '전공'으로 표기된 과목만 기재 (전공필수, 전공선택 등)
 - 이수구분이 '일반선택' 이나 '교양' 등으로 이수한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 불가
 - 교직과목으로 이수한 교과교육영역은 인정 불가
- 2) 이수구분이 '전공'인 과목을 성적표에 있는 명칭 그대로 이수과목명에 기재하고 취득학점과 성적 등급을 정확히 기재(성적표에 있는대로 기재)

예) 과목명: 영어회화Ⅱ → 영어회화2(x), 영어회화Ⅱ(O),
성적등급: A0 → A(x), A0(O) / A → A0(x), A(O)
동일한 과목명으로 I, II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과목명 그대로 각각 기재
- 3) 독학사로 취득한 학점 등 성적이 부여되지 않는 과목, Pass/Fail로 성적이 부여되는 과목은 P로만 기재함(단, F과목은 기재하지 않음)
- 4) 전공과목은 전공 부분에만 기재하며, 내용란이 부족할 경우 페이지를 추가하여 작성
 - 단, 교직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 전공 부분에 행을 추가하여 작성
- 5) 교육부 고시 기본이수과목으로 인정 가능 여부, 전공과목 인정 가능 여부 등은 전공주임교수가 심사하며, 인정 가능한 전공과목 30학점 이상일 경우 입학 가능함 (단, 주임교수 검토 결과 30학점 이하의 학점만 인정된 상황에서 입학하였을 경우 교육대학원 수학 기간이 늘어날 수 있음)

라. 교직과목 학점인정 작성방법

- 1) 교직과목은 교직과정이 개설된 대학에서 취득한 교직과목에 한해서만 인정 가능
- 2) 학부에서 개설된 '교직과목'이 성적표 상 이수구분: '교직'으로 표기되었을 경우만 인정 가능
- 3) 교직 학점인정 교과목이 학부에서 '일반선택'이나 '교양' 과목으로 기재된 경우, 출신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되었음을 인정하는 확인서('교직과목 개설/이수 확인서-자유양식')를 첨부받아 첨부하여야만 교직과목으로 인정 가능
- 4) 교육부 고시 제6조에 따라, 이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본 교육대학원에서 타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직과목을 면제할 수 있음
 - 학점인정서 교직란에 "예) 중등학교 2급 교사자격증 소지자"라고 기재한 후 교사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이수한 교직과목은 기재하지 않음)

마. 유의사항

- 1) 신청인 부분과 우측 신청 현황 부분만 작성하며, 회색 음영 처리된 부분(인정현황, 교수확인 및 서명)은 작성하지 않음
- 2) 출신대학 및 학과는 전공과목 인정이 가능한 출신대학 정보를 기재
 - 여러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에 대한 인정이 필요한 경우 최종학교 정보를 기재
- 3) 정보의 오류가 없도록 양식에 타이핑 하여 작성하도록 하며, 본인 서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출력 후 본인 서명하여 제출(또는 전자 서명 가능)
- 4) 학점인정은 최종학위를 취득한(졸업한) 출신대학의 학점에 대하여만 가능하며, 대학원 과정 학점 인정의 경우 동일 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
- 5) 제출된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인정서는 본 교육대학원에서 소정의 심사 절차를 거쳐 인정여부를 결정함
- 6) 인정된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은 졸업 시 교원자격 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에서 전공 및 교직 과목 이수 여부에 판단되는 것으로 본 교육대학원 졸업요구 학점과 별개임